

# 산림청, 백두대간 지역 임목벌채 제한 추진

산림청은 백두대간 지역 分收林에서의 대규모 벌채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 백두대간 주변 산림에서의 무분별한 벌채를 막고 생태적인 임목벌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.

- 최근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변천리 일대 백두대간 주변 분수림에서 대규모 벌채가 진행되고 있어 백두대간 훼손은 물론, 산림경관과 야생동·식물 서식환경 등 생태계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임목벌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.
  - 벌채면적('96~2000) : 399ha(2000년도 98ha 벌채)
- 분수림이란 국유림에 개인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임목벌채시에 국가와 개인이 1:9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는 산림을 말하며, 국가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조기에 국유림자원조성을 추진하고자 1908년부터 추진한 제도이다.
- 현행 규정으로는 백두대간 주변 사유림 및 분수림에서의 임목벌채를 금지시킬 수 없으며, 벌채방식에 대해서도 '98년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사유림 벌채규정을 폐지하여 국유림과 같은 벌채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

이므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.

- 분수림내의 나무는 사유임목으로 취급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산림청은 백두대간 지역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벌채제도 개선 및 분수림, 사유림의 적극 매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백두대간 지역 임목벌채제도 개선대책」을 마련하였다.
  - 백두대간 마루금 지역 산림에 대해서는 벌채 제한 추진
  - 분수림 설정권자와 협의하여 벌채 제한 유도
  - 벌채 제한이 어려울 경우 벌채 예정지 국가매수 추진
  - 1차적으로 백두대간 주변산림(마루금에서 1.5km이상 5km 이내 산림)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벌채를 막고 생태적인 임목벌채가 이루어지도록 국유림 벌채규정을 따르도록 유도
  - 5ha이내 소구역 벌채 및 撇伐(골라베기)
  - 계곡부, 능선부, 암석지 등은 수림내 (20~30m폭) 의무적 존치
  - 산림토양 교란이 적은 架緣集材 유도
  - '98. 6. 29 규제개혁 일환으로 폐지된 사유림벌채규정을 벌채로 인한 산림훼손방

지 및 산림생태 안정을 위해 점진적으로

보완

· 벌채면적, 수림대 존치지역, 벌채방식 등

규제

· 2001년도 산림법 개정 추진

### 생태적 임목벌채지침 개발 보급

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위해가 적은 벌채작업  
지침을 작성하여 보급

-백두대간 지역 분수림, 사유림을 국가에서 적

극 매수

· 2001년 분수림 임목매수 예산 : 60억원  
(2000년 실적 : 4000ha)

· 2001년 사유림 매수 예산 : 219억원  
(2000년 실적 : 6252ha)

-백두대간 보전지역의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  
추진

· 2001년 2월 산림청이 발표한 「백두대간  
보전관리대책」에 의거 현재 관리범위 설정  
을 위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음

